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김선민·신장식·한창민

박은정 • 차규근 • 정춘생

김준형 · 서왕진 · 이해민

문진석 · 김재원 · 김민석

김 윤・장종태・조 국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 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 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 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당 12개월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로 한다.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병역법」에 따

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1. ~ 4. (생 략) <신 설>

지 아니한다.

② (생략) <u><신 설></u>

개 정 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 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 <u>로 한다.</u> <u><단서</u>삭제>

- 1. ~ 4. (현행과 같음)
-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 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 입기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 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 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

③ (생 략)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삭 제>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생 략)

<신 설>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가 산입) ① 자녀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 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을---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 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u>전부 또는 일부를</u> 부담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생략)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
으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u></u>
<u>전부를</u>
<u> </u>
제51조(기본연금액)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 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 액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삭 제>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

②·③ (생 략)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가. (현행과 같음) < 사 제 >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